

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10.

발의자 : 박광온 · 송갑석 · 권칠승

김영주 · 전현희 · 김종민

이춘석 · 윤관석 · 김현권

송옥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,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(語文)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의2제2호).

법률 제 호

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2호 중 “차주(借主)가”를 “차용인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